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고지 등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1. 공고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고지 등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명	대상지	주소	공시송달사유
1	박노립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71-1번지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268번길 41-25	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의 허가) 위반
  -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0.5m 이상의 성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고지 등재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6. 의견제출처
  - 제출기한 : ~ 2026. 6. 25.(목)까지
  -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등

-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
- 7. 공고기간 : 2026. 6. 5.(수) ~ 2026. 6. 25.(목) / 15일간
- 8. 게시장소 : 파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9. 문 의 처 : 파주시청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 ☎031-940-8624

PAJU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	(전화번호: )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